

미래비전사업단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과는 별도로 지속가능한 대학의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자 설치한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속 미래비전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이 규정은 대학의 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기능 및 조직

제3조(업무) 사업단은 대학의 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으로서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수익창출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단 운영 및 사업 총괄(기획 및 지원)
2. 산학협력사업 기획 유치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운영 지원
3. 창업지원사업 기획 유치 및 운영 지원
4. 평생교육사업 교육과정 유치 및 운영 지원
5. 학교 기업 기획 유치 및 운영 지원
6. 국제교류협력사업 기획 유치 및 활성화 운영 지원
7. 대학의 투자유치 및 마케팅 활성화 운영 지원
8. 정부 R&D 역량강화 활성화 운영 지원
9. 산학연관 과제 발굴 활성화 운영 지원
10. 관련사업과 연관된 계약체결 및 이행,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
11. 국책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 및 예산 자율 편성, 인력 구성 관리 업무
12. 기타 대학 발전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구성) ① 본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에는 단장을 둔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원센터와 사업지원실을 둔다.

④ 센터장과 실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센터장과 실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을 둘 수 있으며, 과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사업단 업무를 수행·보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(멘토), 전문위원, 직원(매니저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)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계획수립 및 성과반영) ① 사업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해 매년 성과 분석을 실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성과분석을 통해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교원 및 직원에게는 예원예술대학교 교원 및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의한 신분전환 기준은 예원예술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직원인사규정에 의한다.

제6조(연봉책정) ① 사업단 기본연봉은 개인의 능력,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.

② 사업단 인력으로 채용 시 국책사업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급여 조건을 맞추어 지급할 수 있으며

제6조에 의해 예원예술대학교 교원 및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별도의 연봉을 책정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 및 심의사항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원미래비전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, 부위원장은 미래비전사업단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단이 수행할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 관련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3인 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이 본 사업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4장 운영비 및 성과급 관리

제10조(운영비 및 성과급) ①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 및 민간사업의 지원금 유치 및 건물에 대한 투자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투자유치 금액의 일부를 사업단 운영비 및 성과급으로 지급한다.

② 평생교육과정 유치 및 기획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일부를 사업단 운영비 및 성과급으로 지급한다.

③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의 산학협력단, 학교기업의 수입 중 일부를 사업단의 운영비와 성과급으로 사용한다.

제5장 재정

제11조(사업비) 본 사업단의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총당하여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2. 법인 및 본교 지원금
3. 사업단의 수입 및 기업체 지원금
4. 기타 외부기관의 지원금
5.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

제12조(회계)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침과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 단, 두 기관이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원기관의 절차를 우선시 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6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